

法律事務所 利民
Lee & Partners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12 신문로빌딩 2층 (우) 110-061
E-mail: leepartners@hammail.net
전화: (02)730-9951/2 팩스: (02)730-9953

수신 대한약사회

참조 정명찬 팀장님

제 목 약제비 계산서 등 청구대행사에 관한 법리 검토 건

귀 협회의 약제비 계산서 등 청구대행사에 관한 제반 문제점에 관련 질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저희 사무실의 의견을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질의의 요지

최근 환자들의 민간보험사에 대한 실손 의료보험 급여 청구를 위하여 일부 모
바일 앱(App) 사 등이 환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급여청구를 대행하는 서비스
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행업체들이 약국에 대하여 환자의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등(이하 ‘약제비 계산서 등’으로만 합니다)에 대한 대리 발급을 요청
하는 사례가 있다 합니다. 귀 협회는 약사법 제30조에 의하면 환자 본인 외 다른
사람에게 조제기록부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
우에만 허용되고 있는데(약사법 제30조 제3항 각호), 이에 반하여 약제비 계산
서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경우 ① 약국이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발급·제공하기 위한 법적 절차 및 의무가 어떠한지, ② 청

구 대행사가 위임받았음을 약국에 증빙하면 약국이 약제비 계산서 등을 제공해도 되는지, ③ 이러한 대리 발급이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되는지, ④ 제3자 제공에 해당된다면 약국은 환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거나 청구대행사에 확인해야 할 서류 또는 조치해야 할 법적 절차 및 의무는 무엇인지를 문의하셨습니다.

2. 검토내용

가. 약국의 적법절차에 따른 약제비 계산서 등 발급절차

국민건강보험법상으로는 이러한 약제비 계산서 등의 발급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급여기준규칙’이라 합니다)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약국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여기준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가입자 등(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미, 급여기준규칙 제2조 제1항)이 제1항에서 정한 계산서, 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정산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제공하는 양식과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인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식 등에 관한 기준’(2018. 3. 2.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2018-21)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귀 협회가 보낸 양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제비 계산서 등에 대한 발급 청구는 위 규칙 및 고시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권한에 대한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기준규칙이란 법적 성질로 보면 부령인 행정규칙입니다. 일반적으

로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기준은 그 규정의 실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의 사무 처리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89누3564, 93누5635호 등 다수). 본건 급여기준규칙은 사실상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본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다루어지고 모법의 수권이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행정규칙이므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99헌바91). 이러한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선결정에 비추어 보면 급여기준규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규칙 내에 제3자 위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위임한 경우라면 그 대리인이 수령하더라도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들의 정당한 위임이 인정된다면 수임된 대리인에게 약제비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것이 법이나 규칙에 위반된 사안을 아니라 판단됩니다.

나. 약국의 대리발급 요구에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약사법상 환자의 조제기록부와 같이 개인의 건강정보(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됨)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내용은 환자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제공을 요구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공이 제한되며 환자의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환자의 서면 동의서와 그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게 하는 등(약사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여러 요건들을 엄격하게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요건 사항에 관하여도 약사법 제30조 제3항 각 호에서 그 위임의 근거를 두는 등 법률유보의 일반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제비 계산서 등 요구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그 위임입법의 근거가 없이 별도로 행정규칙으로 이를 규정하였고, 제3자 대리수령 등에 관한 위임절차와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의 불비 상황에서 약국이 약제비 계산서 등을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가 제3자에 대한 위임을 통해 발급을 요구한다면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국(요양기관)이 정당한 위임이 의심될 여지가 있다면 위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어플사들이 회원 가입시에 위임에 동의한 약관이 있을 것이므로 그 약관에 가입자가 동의하였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원 가입시 약관을 보고 동의하고 이를 인증해야만 회원 가입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임 동의는 있다고 간주하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 대리발급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합니다) 제17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일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형사처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국의 약사는 환자들의 조제정보 등을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데 환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위임을 받은 모바일 어플사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 제2항에도 ‘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교부하는 것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약국이 제공에 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法律事務所 利民

Lee & Partners

앞에서 본 논거와 같이 환자의 대리인이 환자의 약제비 계산서 등에 대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바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약국이나 약사나 환자 개인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무실의 의견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2021. 8. 13.

법률사무소 이 민

변호사 이 민 희



(첨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정보통신위원회)

□ 질의 1) 온라인을 통한 서명이 자필 서명으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

- (답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제1항에서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제1항에서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며, 제2항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
 - 리턴즈에 환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카카오톡 지갑 인증(본인확인)을 통한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질의 2)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항목 1.3.1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시 환자의 별도 동의는 받고있는가?' 의 해당여부

- (답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7조 제2항에서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환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리턴즈)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교부하는 것

은 제3자 제공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대리인이 환자의 약제비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은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바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자율점검항목 (1.3.1)에 해당되지 않음